

[중국기술이전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①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 ②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 ③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 ④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 ⑤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 ⑥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 ⑦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 ①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 ②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 ③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² 제한하는 것을 포함),
- ④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 ⑤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 ⑥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3.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Global 기업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무역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비용절감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